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서**

**2018년 12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시민대책위원회**



## 1.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

- 최근 5년간 사고성 산재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만 1,426명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이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져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16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21조4천2억
- 태안화력의 지속적 하청 산재 사망은 도급의 정의도 범위도, 처벌도 제한된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의 문제임. 재벌 대기업, 우수한 공기업의 하청 산재사망이 지속되는 것은 무수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근본적 고용구조 개선 없이는 휴지조각이라는 반증.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형사 처벌 하한형 도입 없이는 기업  
의 법 준수 및 예방을 위한 투자,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화학물질 독성정보 관리,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특수고  
용, 배달 노동자등 보호범위 확대, 작업중지 강화등 기간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 MSDS  
노동부 보고와 영업비밀 사전심사승인제도가 없이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제2제3의 메탄올  
중독 청년 7명 실명도 반복될 수 밖에 없음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처 책임강화, 건설기  
계 원청 책임강화가 없이는 매년 600명 건설노동자 사망이 반복됨
-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지 않으면 배달 앱을 이용한 30분 배달제로 인한 청소  
년 노동자의 사망, 골프장 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 반복 됨

## 2. 구의역 김군, 故 김용균님의 죽음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제어장치 없는 산안법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근로기준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 방안
  - 현행의 외주화는 선진외국의 기술적 필요에 의한 수평적 도급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원 하청 수직적, 수탈적 도급
  - 산안법 유해위험업무 도급인가 수 십년전 법제화 되었으나 유명무실

○ 원청은 예방책임지지 않는 현행 산안법

- 현행 산안법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점검, 안전교육 지원등 제한적인 책임만 있음
- 원청이 안전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는 원 하청 공동의무는 동일 사업장, 도급계약, 22개 위험장소로 한정
- 구의역 참사도 위험장소에 명시되지 않아 사고이후 시행규칙 개정, 태안화력도 22개 위험장소에 명시적 지정이 안 되어 있음

○ 원청 시설과 사업장에서 공정관리도 원청이 하는데 처벌은 빠져나감

-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낮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명시 없음
- 구의역 김군도 서울 메트로 대표이사는 산안법 적용 없이 1,000만원 벌금. 태안화력의 10년간 12명 사망사고도 원청은 처벌 없이 무재해 사업장인증

○ 수 십개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저가낙찰 원 하청 구조에서 휴지조각

- 원청에는 수십 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하청 계약 시 산안법 준수를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가낙찰로 2인1조 근무 불가능
- 현행 산안법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없어, 소규모 비중이 큰 산안법이나 매뉴얼은 휴지조각
- 하청은 시설의 소유, 관리권 없어 안전시설 설치 불가능.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개선 요구 권한도 없고, 갑을관계인 원 하청에서 불가능

### 3. 위협의 외주화 방치에 대한 국회 및 정당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

○ 사고 발생 때마다 앵무새 재발방지 대책 발표

- 2016년 5월 구의역 참사,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참사 등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때 마다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조문, 약속, 입법발의. 그러나, 법안소위는 표류, 기업 이익 옹호로 법안 폐기 반복

○ 언론 발표와 국회법안 심의 걸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지속

- 27일 연내 통과 발표하고도 19일 소위는 1시간 30분만 진행.
- 여야 책임공방만 지속
- 자유 한국당 환노위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12월21일 보도된 SBS 조사에서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 그러나, 정작 법안심 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고,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며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일부를 수정하는 누더기 법안 심의를 주장
- 고 김용균님 죽음에 바른미래당은 논평발표,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의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 약속.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음. 그러나 법안소위 심의에서는 도급금지와 처벌강화가 과잉입법 주장

####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

1)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01년 이후 경제적 손실 262조 5,678 억원

- 2001년~ 2016년 산업재해 정부 통계 1백45만3천949명. 사망 3만8천8명. 매년 평균 9만 872 명이 산업재해. 산재사망 노동자는 2천376명.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보상 노동자 및 250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재통계 누락. 실질 산업재해 규모는 더욱 클 것임.
- 동 기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62조 5,678억이며. 2015년 경제적 손실액 20조 3천955억. 2016년 경제적 손실액 21조 4천 2억.

2) 고용구조,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사고성 산재사망 절반이 추락재해 등 전 근대적 재해. 매년 동일 사업장. 동일 유형의 산업 재해가 반복 발생.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으로 노동자와 전체 사회적 손실만 확대
- 하청, 파견 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배달 앱 등 고용형태의 파편화, 계약관계의 다양화 확산. 개별 사고 발생이후 땀질식 법 개정의 한계 노정.

### 3)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한 사업장 예방대책 형해화로 시민안전까지 위협

- 구미 불산 누출로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하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탄올 중독사고, 삼성의 불산, 황산, 이산화탄소 중독까지 끊임없이 화학물질 사고와 직업병 발생. 그러나, 현장에서는 MSDS 제도가 노동부 보고의무도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 4) 사업주 90%가 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적 산재사망 지속

- 반복적 산재사망의 대표적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음. 주요하게는 평균 500만원 내외 수준의 낮은 벌금. 기업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원인이기도 말단 관리자, 노동자만 처벌.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처벌 미약

##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

####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 확대

- 태안화력, 구의역등 반복적 하청 산재사망 업종의 도급 금지
- 발전사업 정비보수, 궤도 수리 보수 업무의 도급금지 법안 명시
- 도급금지 범위 정기적 추가 확대 법제화

#### ○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 입법예고 당시의 중대재해와 건설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 시 하한형 처벌 도입

#### ○ 화학물질, 건설업 재해, 보호범위 확대를 비롯한 전면 개정

- 현행법 일부 내용 수정하는 땀질 처방식 개정은 근본적 해결 불가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

- 산재사망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을 포함하여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즉각적인 국회통과가 필요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 및 기업처벌 강화 반대는 OECD 산재사망 1위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MSDS 보고와 영업비밀 사전심사 반대는 화학물질 누출, 폭발, 직업병의 반복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하고, 법위반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도입을 포함해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대로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6. 산안법 주요 내용과 요구

###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 ○ 배경

- 최근 5년간 사고성 산재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만 1,426명
- 하청 산재사망의 지속적 증가.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95%가 하청
- 인천공항철도 선로보수 하청 노동자 5명 사망, 조선업 선박 비파괴 검사 하청 노동자 4명 직업병 사망.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3번의 반복 사망, 광주 남영전구 4단계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이마트 냉동설비 보수 (4명 사망), 삼성전자 불산, 이산화 탄소 누출 등

#### ○ 정부 산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행법의 도급인가 적용대상을 도급금지로 규정.
- 일시 간헐적 작업, '수급인 보유 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적용제외
- 현행의 도급인가 제도를 정비하고 재하도급 금지. 원청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부여

#### ○ 도급 금지 관련 국내외 입법례가 없다는 것은 호도된 주장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국내 법령]

-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규모 공사 직접 시공제 도입. 원청 직접고용으로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승강시 시설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 대책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산 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외국 건설업의 직접 시공 규정을 통한 도급 금지 (직접 시공) 규정]

- 미국 : 계약금액의 30%이상 직접 시공 규정 50개 주.  
그 중 뉴욕 등 16개 주는 50%이상 직접 시공 규정
- 영국 (도로국): 계약금액의 60%이상 하도급 금지
- 중국 : 2000년 입찰법으로 직접 시공의무화 및 벌칙 규정 도입

○ 서울 메트로 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 이후 사고 절반 감소

- 하청업체 관리 비용 감소로, 전환에 따른 비용 낮음
- 구의역 참사로 직접 고용 전환 후 스크린도어 사고 절반감소로 시민안전 확보

○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정기적 추가 확대 구조 제도화 필요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 생략--

4. 전기사업의 발전설비의 운전, 점검 및 정비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5.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6.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7.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보수, 철거 해체하거나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 그 밖에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심의를 거쳐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를 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동안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 및 작업
2.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종 및 작업
3. 산재예방 정책심의회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를 결정한 업종 및 작업

## 2) 원청의 책임 강화

### ○ 현행법에서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불분명으로 사고발생 지속

- 태안화력 현장도 현행 22개 위험장소 직접 명시 없고 해석이 모호. 지난 10여년 동안 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원청 책임과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던 근거가 됨
-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보수 노동자 4명 사망.도급 규정 적용 안 되어 100만원 과태료로 끝남.
- 방사선 취급 작업, 전기 작업 등에서 하청 산재사망 발생. 사고 이후 시행규칙 정비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등에 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청 책임 및 처벌 규정 적용 난항
- 2011년 인천공항철도 선로보수 하청 노동자 사망, 구의역 참사 발생, 수리보수에 대한 <도급> 적용 여부로 책임 및 처벌 제한. 2016년 사고 이후 시행규칙 정비
- 2015년 메르스 참사 당시 병원 사업장의 감염관리 점검. 식당, 청소, 응급 이송 등 다양한 도급계약에 대해 원청 병원의 책임 규정 논란. 전혀 개선되지 못함.
- 지하철 시설의 소유권 원청에 있고, 청소, 수리정비 연계공정 조정은 원청 진행. 청소 노동자 포함 하청 노동자 석면 노출, 터널 청소, 선로인접 작업 청소 등에서 원청 책임 논란 발생
- 고양 터미널 식당 리모델링 공사 용접작업 화재로 수 십명 질식사고 발생. 시설 소유권이 원청. 배기장치, 냉난방 시설, 미끄러운 바닥재 교체 공사 등 원청의 지배관리.. 출입 노동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화재, 질식, 폭발사고 등에 대한 책임 논란

###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급, 관계 수급인, 도급인의 사업장 정의 규정 및 정비. 법 적용 범위를 확대
- 원청 책임내용의 대부분은 현행법 적용임.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도급인이 위험 정보제공 하지 않을 시 하청의 작업거부 가능. 계약이행 지체 책임 면제 등 추가
- 안전보건조치 미 이행 시 원청 사업주 처벌은 하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

## 3)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

### ○ 배경

-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솜방망이 처벌은 ① 산재사망 벌금이 노동자 1인 당 평균 500만원 내외로 외국대비 지나치게 낮음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됨 ③ 산재예방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이나, 하급담당자만 처벌
- 현행 산안법의 형량문제뿐 아니라 원청 처벌 및 양벌규정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되어 왔음
- 산재예방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사고가 반복됨. 기업의 최고 대표이사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안전계획의 실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없음.

○ 산재사망은 단순 안전조치 위반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체제 문제. 벌금형이나 하급, 하청 관리자 처벌로는 재발방지 불가능

- 2012년~2013년 당진 현대제철 20명 산재사망. 하청 노동자 80%이상. 노동부 감독 결과 16,000명 근무 현장에 보건관리자 2명, 안전보건 투자 예산이 2012년 10억, 2013년은 0원으로 밝혀짐.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도 없으며, 5월 특별감독에서만 1,123건 법 위반 적발. 대기업 현장의 이러한 현실은 계속 밝혀짐
- 2012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 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 23%는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 500인 이상 기업 25%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고, 11.6%는 타 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음
- 2012년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 70%가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 500인 이상 기업의 72.5%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고, 54.3%는 타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은 5%
- 2012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 에서는 800억- 1,500억 이하 공사 2011년 안전보건 지출비용 5,000만원 미만 23.2% 또한, 120억 - 800억 미만 공사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 35%임
- 2014년 조사에서는 1000인 이상 기업 중 28개 업체가 안전관리 위탁, 31개 업체가 보건관리 위탁. 노동부 점검 결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지엠 대우 자동차, 현대 건설, 두산 중공업 등 대기업도 보건관리자 미 선임으로 법 위반

○ 개정안 주요 내용

- 산재사망 처벌 형량 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법인은 분리 부과 10억
-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강화 : 산재사망 처벌에 산안법 원청 책임 위반 추가
- 원청책임 위반 처벌 강화 : 산안법 원청 책임 법 위반시 하청의 법 위반과 동일 처벌

○ 원청 처벌강화와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필요

- 개정안 조항은 사망사고 발생과 처벌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있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증은 전제로 처벌 조항이 도입 된 것이므로 법리적 문제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

○ 관련 국회 발의 법안

- 정부 산안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입법 개정안과 동일
- 신창현 의원, 박광옥 의원 1년 이상 하한형 처벌 발의법안 환노위 계류 중
- 처벌강화 및 원청 처벌 강화 환노위 계류되어 있는 입법 발의안 다수임

○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도입과 건설 불법하도급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도입 필요

-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39조 3항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않음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
- 반복적 산재사망에 하급관리자, 하청 관리자가 벌금 몇 백만원 수준의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2, 400명 산재사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임.
- 2월 입법 예고 당시의 산재사망 1년 이상 하한형.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 3년 이상 하한형 도입이 필요함.

○ 형사적 제재 강화와 위헌 주장에 대한 반박

- 하한형 도입은 국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입법례가 있음

(김성룡 경북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18년 8월호 기고 발췌 요약)

- 독일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법인에 대한 직접적 형사책임 인정.
- 하한형 징역형 도입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의 법적 성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 동 조항들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령상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원청 책임등과 같은 의무 규정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반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유사범죄들의 형벌보다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으로 입법예고 되었었다는 것이 오히려 비판되어야 함.
- 도급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이 도급 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둘째, 자신의 사업장이나 자신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셋째, 그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위반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간단히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책임과 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될 것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투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 준수와 이행, 실질적 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의 안전인식의 전환을 단순히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화 되어야 함.
- 원청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도입되어야 실제적인 사업주 예방노력이 강제될 것임.

### ○ 외국의 산재사망 처벌 수준이 낮다는 왜곡된 주장

- 경총은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이 ‘안전보건규정의 고의적 위반’에 기초하여 국가별 처벌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처벌 현실과는 다름.

\* 경총 국회 제출 자료에는 일본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미국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 독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영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8백만원 벌금으로 제출

### [미국]

- 미국의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인 현대 자동차 30억 벌금 부과

미국 2008년 안전보건 감독 실시 사업장 121개에 각 10만 달러(약 1억1천백만원)벌금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벌금 랭킹 10대 업체

1위 업체 : 약 226억 9천만원/ 2위 업체 : 약 124억 2천만원/3위 업체 : 약 94억

[영국]

- 영국은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28건 기소하여 80%이상이 유죄판결, 평균 벌금이 2천 4백만원. 1992년 Welch 공장 청소작업 중 폭발사고로 4명 사망사고에 대해 약 5억 원의 벌금 부과
- 영국은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대형 슈퍼마켓인 ‘아이슬란드’ 에어컨 공기 정화 시설 관리 하청 노동자 3미터 천장 작업대 추락사망 사고에 대해 37억 5천만원 벌금 부과

[캐나다, 호주 준주, 영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

- 캐나다 2003년, 호주 2004년, 영국 2008년 다양한 형태의 기업 살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부작위로 인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처벌 강화

국가	제정	명칭 및 대상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 취업자, 일반시민 재해 대상	-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처벌 - 개인 : 부상은 최대 10년의 징역/ 사망 무기 징역. 무한 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 기업: 전과 기록/ 보호관찰/ 무한 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 산업재해. 취업자, 하청 산재 모두 대상	-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 개인 벌금 약 2억 5천만원. - 기업 벌금 약 12억 7천만원 혹은 20년 금고 또는 병과. 기업 벌금의 총량한도 약 60억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 모든 사고 대상.	-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 벌금의 상한선 없음. 의회 지침으로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 10%. 악의적인 경우는 10%이상

○ 형사적 제재 강화와 위헌 주장에 대한 반박

(김성룡 경북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18년 8월호 기고 발췌 요약)

- 독일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법인에 대한 직접적 형사책임 인정.
- 하한형 징역형 도입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의 법적 성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 동 조항들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령상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원청 책임등과 같은 의무 규정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반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유사범죄들의 형벌보다 지나치

게 낮은 법정형으로 입법예고 되었었다는 것이 오히려 비판되어야 함.

- 도급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이 도급 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둘째, 자신의 사업장이나 자신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셋째, 그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위반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간단히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책임과 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될 것임.

○ 개정 대안

- 입법예고 당시의 처벌 조항 환원

개정(안)	민주노총 (안)/ 입법예고 당시 (안)으로 환원
제168조(벌칙)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 1년 이상 7년 ----- 제00 조(벌칙)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다시 하도급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 대상 확대

○ 배경

- 건설공사 중대재해의 25%이상이 건설기계장비 재해. 특수고용으로 안전보건 사각지대.
- 각종 배달 앱 이용 30분 배달제로 청소년 노동자 사망 다발. 중개사업 으로 사각지대
- 2014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자 60만명. 본점에서 기계설비,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제공. 가맹점 평균 4인 미만 고용. 치킨 전문점 등은 재해율 3.21로 평균의 9배.

## ○ 주요 내용

- 법 전문에 <일하는 사람> 보호대상 임을 명시
- 사업주 정의와 근로자 정의는 현행 유지. 특수고용,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로 한정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각각 부여하여 사업주 정의에 추가
- 정부의 책무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명시. 정부의 사업은 확대

## ○ 경총 및 사업주 단체 주장에 대한 의견

- <일하는 사람>의 정의의 모호성으로 기업의 의무 범위 확대 주장.
- 개정안은 특수고용,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점 등으로 사업주를 특정하고, 특수고용은 안전교육, 프랜차이즈 본점은 안전보건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등 각 사업주체별로 의무로 특정하고 있어 모호성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검진, 보호구 지급 등 개별 노동자에 보호조치는 해당 법률에서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의무가 모호하게 확대된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는 유리 된 주장임.

## 5) 물질 안전보건자료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사전 심사

### ○ 배경

- MSDS 제도는 화학물질 직업병과 관련한 첫 단계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보고제도가 없어, 10%미만의 사업장 감독 시에만 확인 가능
-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는 영업비밀 대상이 아닌 물질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있거나, 동일 제품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함.
- 환경부 소관 법령은 영업비밀 사전 심사가 도입, 오히려 노출이 훨씬 더 많은 일터에 대한 규제 없음. 영업비밀적용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대폭 증가

### ○ 개정안 주요 내용

- MSDS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도 도입. 정보 공개 청구 범위 확대

## ○ 경총 및 사업주 단체 주장의 허구성

### ① 노동부, 환경부 중복 규제 주장

- 노동부와 환경부의 그 목정성이 달라 대상기준과 요구정보가 다름 요구 정보도 다름 환경부는 1톤 이상 단일물질 대상으로 대상 차이가 매우 큼. 환경부 확인이력 추적제도가 언젠가 도입된다면, 동시 제출 등 합리적 방안 도출 마련하면 됨

### ②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의 영업비밀 누출 우려

- 유해한 물질은 비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럽에서 1960년대부터 정착된 기초.
-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유량 공개 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름. 우리나라의 MSDS 제도 역시 함량을 범위로 제출하므로, 영업비밀이 문제될 것 없음

### ③ 인터넷 공개 필요성

-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MSDS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국내 상황이며, 정부가 MSDS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를 위하여 이득임. 미국에서는 Consumer Product Database에서 이미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체를 인터넷으로 공개

## 6) 작업 중지권

### ○ 배경

- 노량진 수몰사고, 여수 대림 산단 폭발사고, 울산 삼성정밀 사고 등에서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 작업 투입을 거부하였으나 공정에 투입되어 중대재해 사망이 계속 발생
- 중대재해 발생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계되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낮은 과태료와 벌금납부로만 그침.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통해 긴급 안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사업장에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할 필요

## ○ 주요 내용

- 사업주, 노동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구분
- 작업 대피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처벌 조항 도입
-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 시 구분
- 지침으로 운용되던 노동부 작업 중지를 법제화 하면서 요건을 엄격히 규정

##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은 재발 방지 대책의 가장 핵심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위반이 90%에 달하고, 노동부 감독도 사업장 대비 10% 내외인 현실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현실적인 조치임.
- 노동부 작업중지의 요체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작업재개>를 하라는 것임. 법 위반 감독 실시율도 낮고, 위반 시 처벌도 미약한 상황에서 최소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현장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임. 한국의 중대재해가 동일 기업과 동일 유형의 반복성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성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임
- 외국에서는 감독기관의 수시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개선대책 이후 작업 재개하면, 작업 중지 해제도 엄격함
- 감독관의 작업 중지는 계속 되어 왔으나, 사업주나 경총이 법령에 없는 작업 중지를 감독관 지침으로 자의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함.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법제화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주의 불필요한 소송 남발 때문임.

## ○ 입법 예고안의 후퇴

- 입법예고안 보다 후퇴하여 사업장 전면 작업 중지는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 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진행되는 전면 작업 중지 대상보다 현격히 후퇴하는 것임.

## 7)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및 별도 절 구성

### ○ 배경

- 건설업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 하청 비율 95%
- 발주사업의 특성으로 공사 진행의 절대적 권한이 발주처에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없음. 대형 교량사고, 붕괴 사고 등의 원인은 설계당시부터 안전이 배제되어 있고, 발주처의 공기관리 문제가 산재다발의 가장 큰 원인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에서 17명 사망 발생. 임대라는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원청 책임 과 처벌에서 빠져나감
- 매년 건설업 산재사망이 6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전체 산재사망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산재사망은 지속 증가
- 2017년 8월 범 정부 합동대책으로 건설산재사망이 주요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대책 발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원청 처벌 도입과, 건설 산재사망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 경우 3년이상 하한형 처벌 도입

### ○ 개정안

- 설계당시부터 시공까지 발주처의 책임 강화
-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 강화
- 건설업 별도 절 구성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으로 강화

### ○ 주요 요구

- 건설업 산재사망 감소대책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 조항은 입법예고 당시 조항이 삭제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만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적발이 어렵고, 산재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음. 하한형 처벌 도입이 삭제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그 실질 효과가 퇴색됨.
- 하한형 처벌 도입 복원

## 7.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1) 시민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속
- 2003년 192명 사망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공사 사장은 무죄. 기업도 무죄,
- 기관사는 금고 4년
- 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병원이 받은 벌금은 800만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존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판결
-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의 사회 의제화 되어 입법 추진

###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 명칭 :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 대표발의 : 故 노회찬 (2017년 4월)

#### ○ 국회 상황

- 동일한 취지로 전해철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입법 발의
- 2018년 세일전자 화재사고 이후 정동영 의원이 입법 발의
- 4개 법안 모두 법사위 계류 중임

#### ○ 목적

- 산업재해 및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

#### ○ 적용범위

-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위험물 업소

### ○ 적용대상

- 노동자나 이용자 기타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고용 노동자 및 하청 노동자도 포함
- 세월호 참사,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 일반 시민 재해 포함
- 노동자나 이용자 외에도 지역주민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적용

### ○ 사업주의 의무

-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
- 기업이 제 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등의 명칭으로 그 운영과 관리 책임을 이전시킨 경우나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위탁된 경우에도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그 제 3자나 수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

### ○ 처벌 적용 조건

- 위와 같은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

### ○ 처벌 적용대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상사고가 발생

- 기업의 대표이사과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책임자 처벌
- 기업 법인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

○ 처벌

- 사망인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
- 상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